

「2025년 1분기」

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2025. 4.

재난안전실

보고 안건

(단위: 천원)

연번	예비비 사용건	소관부서	사용액
계			56,615,380
1	'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' 예비비 사용	도로계획과	40,489,926
2	'공사대금 청구소송' 예비비 사용 (울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)	도로계획과	588,964
3	'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' 예비비 사용	도로계획과	15,536,490

□ '25.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: 3건, 566억 1천 5백만원

○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① : 부당이득금 40,490백만원 집행

【 소송 개요 】

- ◆ 사 건 명 : 대법원 2024다27788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
- ◆ 당 사 자 : (원고) 케이비부동산신탁, (주)하림산업
(피고) 서울특별시
- ◆ 사건토지 : 서초구 양재동 225 외 5필지(8,675.25㎡)
- ◆ 청구원인 : 원고는 사건토지 소유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
- ◆ 판결결과 : 파기환송('25. 1.23)
- ◆ 판결사유 :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종전 소유자(파이시티 등)의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·배타적 사용·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

- 사건토지는 2009년 “양재파이시티 신축사업”의 실시계획인가 시 종전 소유자(파이시티)로부터 도로부지로 기부채납 확약을 받고, 사용승낙을 받아 2013년 공사완료 및 추모공원 진입로 등으로 사용중이었으나,
- 2014년 파이시티가 파산 결정되었고, 2016년 (주)하림이 소유권 취득 후 신탁사(케이비부동산신탁)를 통해 2021.3월 우리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함
- 1심 원고 일부승소, 2심 서울시 승소, 3심 파기환송에 따라 파기환송심(2심) 진행중으로 판결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(연12%) 등 불필요한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 40,490백만원을 원고에게 신속히 지급함

(단위: 원)

부 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지출액	지출일
	계		40,489,925,960	
도로계획과	부당이득금 반환청구	배상금 등 (305)	40,489,925,960	'25. 2. 7.

○ 공사대금 청구 소송 ② : 간접공사비 589백만원 집행

【 소송 개요 】

- ◆ 사 건 명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4939 공사대금
- ◆ 당 사 자 : (원고) 북일종합건설 주식회사
(피고) 서울특별시
- ◆ 사건공사 :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
- ◆ 청구원인 : 서울시에서 발주시행한 「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」와 관련하여 시공자인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연장된 공사기간 368일에 대하여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
- ◆ 판결결과 : 패소('25. 2.20. 우리시(89%) 패소)
- ◆ 판결사유 :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원고들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렵고,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완료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함

- ‘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’ 시공자인 원고는 연장된 공사기간 368일의 공사비에 대하여, 원고 책임이 없음을 사유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
- 재판부는 해당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원고들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렵고,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완료했음 등의 이유로 청구금액의 90%와 이자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림
- 판결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(6~12%) 등 불필요한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 589백만원을 원고에게 신속히 지급함.

(단위: 원)

부 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지출액	지출일
계			588,964,455	
도로계획과		배상금 등(305-01)	588,964,455*	'25. 3.14.

* 원금 : 502,312,160원, 이자 86,652,295원

○ 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③ : 변상금 및 가산금 15,536백만원 집행

【 소송 개요 】

- ◆ 사 건 명 :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246 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
- ◆ 당 사 자 : (원고) 서울특별시
(피고) 서울지방우정청장
- ◆ 사건토지 : 총무로1가 21-16 외 21필지(5,194.5㎡)
- ◆ 청구원인 : 서울지방우정청 소관 토지에 서울시가 도로를 개설·사용한 것을 이유로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 무효확인의 소 제기
- ◆ 판결결과 : 원고일부승('25. 2.14.)
- ◆ 판결사유
 -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·수익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고, 피고가 5%의 사용요율을 적용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중대·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도 없음
 - 다만 소멸시효가 도과된 부분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어 무효가 인정됨.

- 서울지방우정청 소관 국유지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도를 개설하였음을 이유로 '22.6. 우정청이 우리시에 132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우리시가 해당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('23.11.)
- 1심 재판부는 변상금 132억원 중 채권 소멸시효가 도과한 10억원에 대한 무효만 인정, 나머지 122억원의 변상금은 유효한 것으로 판결함
- 우리시는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, 변상금 미납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소송 진행중에도 연10%의 연체가산금이 계속하여 발생하므로, 추가적인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 변상금 및 누적 연체가산금 총 155억원을 예비비로 신속히 지급함

(단위: 원)

부 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지출액	지출일
계			15,536,490,230	
도로계획과	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	배상금 등 (305)	15,536,490,230	'25. 3.31.

재난안전실 2025년 1분기 예비비 사용보고

□ 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

제3조 제3항에 따라, 2025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예비비 사용은 총 3건, 566억 1천 5백만원으로,

모두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판결금을 지출하였습니다.

○ 첫 번째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결정에 따른 판결금입니다.

- ‘양재파이시티 신축사업’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서초구 양재동 토지 5필지에 대해 사용 승낙을 받고 도로를 개설하였으나, 현재 소유자가 토지 무단점유 및 사용을 주장하며 우리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.

- 1심은 원고 일부승소, 2심은 서울시 승소, 3심은 파기환송되어 다시 2심 진행 중으로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404억 9천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.

○ 두 번째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 결정에 따른 판결금입니다.

- ‘을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’ 공사기간 연장에 관하여, 시공자인 원가고 책임 없음을 사유로 공사비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시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공사대금 5억 8천 9백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.

○ 마지막으로 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정에 따른 판결금입니다.

- 서울지방우정청이 우리시가 정당한 권원 없이 소관 토지에 시도를 개설하였다며 변상금을 부과하였고, 이에 우리시가 해당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,
-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, 소송 진행 중에도 연체가산금이 계속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변상금과 누적 연체금 등 총 155억 3천 6백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.

□ 이 소송들은 예산편성 당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, 판결과 동시에 판결금 및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, 기획조정실로부터 566억 1천 5백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.

□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